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0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이란 용어를 삭제할 경우 조문의 의미 변경 등으로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된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안 제2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나. 안 제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다. 안 제36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함(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6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35조).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 중 “자치구 구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제5장제3항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를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

시”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란”으로,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로 한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을 “서울시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제11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로,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를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로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 중 “제5조제1항 중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로 한다.”를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로 한다.”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안 제20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6조 중 제5조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시가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안 제2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안 제31조 중 “공사”를 “공사·공단”으로 한다.

안 제35조 중 “제4조제3항 중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으로 한다.”를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36조를 삭제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3항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임기제공무원” 을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을 “공기업” 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 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 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 을 각각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 감정노동” 을 “감정노동” 으로, “서울시”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 란” 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 란” 으로, “지방공기업” 을 “공기업” 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 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 로 한다.

<신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로, “지방공사” 를 “공사” 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5조제1항 중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 를 “시 산하 공기업의 장이 제4조” 로 한다.

<신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 을 “서울시에 소재하는” 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

-----.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정안과 같음)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 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 을 “산하 공기업” 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략)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제28조(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

제20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안과 같음)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제28조(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

립한 공사” 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 사채” 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의 사채”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기업” 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 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으로 한다.

-----.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

-----.

----- 공사·공단-----

----- 공사·공단-----

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 을 “공기업” 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
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
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지방도매시장
의 경우 중도매인” 을 “중도매
인” 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지방도매
시장” 을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도매시장” 으로 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자치구”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서울특별시의”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을 “투자기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직영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란”으로,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로 한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을 “서울시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 시가”를 “이란”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사·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
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을 “서울특별시가 「지
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
관을”을 “출연기관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회계”란”을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의한 지방직영기업”을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3조 중 “지방 직영기업”을 “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

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또는”을 “공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공사 및 공단”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또는”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으로, “다른 지방공기업 또는”을 “따라 설립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제27조(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 사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사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의 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문화원의 육성”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지원)”을 “(문화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을 “(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문화원”을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서울기록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이하 “서울기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지방공립대학”을 “서울시립대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